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13 년 08 월 26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3 년 08 월 30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60,000,000,000,000 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본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 (전화: 02-3783-0901 (www.fidelity.co.kr))
금융투자협회(전화: 02-2003-9000 (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액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1
3. 모집예정금액.....	1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5. 인수에 관한 사항.....	2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2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3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3
4. 집합투자업자.....	4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4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5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0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1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4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7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20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6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7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3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6
1. 재무정보.....	36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8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4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45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5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46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47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0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50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54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55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7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58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69069
종류 A	69071
종류 A-e	AB476
종류 C1	69070
종류 C2	99749
종류 C3	99752
종류 C4	99753
종류 C5	99754
종류 C-e	AB477
종류 C-w	AB749
종류 I	76545
종류 CP	92403
종류 N	6907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재간접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60,000,000,000,000좌

- 주 1) 이 투자신탁은 60,000,000,000,000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본 집합투자기구는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기간: 본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하고,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fidelity.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명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69069
종류 A	69071
종류 A-e	AB476
종류 C1	69070
종류 C2	99749
종류 C3	99752
종류 C4	99753
종류 C5	99754
종류 C-e	AB477
종류 C-w	AB749
종류 I	76545
종류 CP	92403
종류 N	6907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7.05.17	-최초설정
2009.05.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에 따라 투자신탁 명칭 변경 (피델리티 미국 <u>종류형</u> 주식투자신탁 - 자→피델리티 미국 <u>증권 자투자신탁 (주식)</u>)
2010.03.16	- 펀드 산업 관련 인프라 선진화 방안에 따른 해외투자펀드 매입기준가 적용일 변경: 제2영업일(T+1) → 제3영업일(T+2) - 자본시장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자산운용보고서 발송 방법 변경, 이익분배금 유보내용 단서조항 추가, 과세 문구 변경,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종료 및 손실 상계 방안 추가 등
2010.05.03	- 종류 E 판매보수율 인하 (1.8% → 1.5%)
2011.01.17	- 체감식으로 판매보수율 인하 및 그에 따른 종류 신설, 종류 명칭 변경 등 (종류 A, <u>종류 E</u> , 종류 I, 종류 CP, 종류 N → 종류 A, <u>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u> , 종류 I, 종류 CP, 종류 N)
2012.07.06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해외주식 등→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및 보수 인하 등 관련 사항 변경 - 투자신탁 명칭 변경(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u>주식</u>)→ 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u>주식-재간접형</u>)) -종류 A-e, 종류 C-e 및 종류 C-w 신설에 따른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이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입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6층 (전 화) 02-3783-0901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운용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화자산의 환헤지 거래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여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및 내용

해당 펀드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명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설립일	1981년 5월 12일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주소	Level 2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Admiralty, Hong Kong 전화번호: (852) 2629 2800 팩스번호: (852) 2845 9051
업무위탁범위	환헤지 관련 운용·운용지시 업무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2013년 6월말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장성문	1971	투자서비스 담당 이사	16개	13,279 억원	[주요 경력] 주식운용 및 리서치 - LG 투신운용 (8 개월) - 메리츠투자자문 (4 년) 보험사 자산운용 - 삼성화재 (2 년) [학력 및 기타 이력] 국제재무분석사(CFA)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존스홉킨스 대학 재무학 석사

※ 상기 운용현황은 모투자신탁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전문인력	운용 기간
김태우	2007.5~2008.3
장성문	2008.3~현재

다.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피델리티펀드-미국성장펀드

(2013년 6월말 기준)

책임운용전문 인력/팀 이름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주요 경력 및 이력
			펀드 수	규모 (USD, 백만)	
Aditya Khowala	1976	포트폴리 오 매니저	0	0	경력: 2012 – 현재 미국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 피델리티 2008 – 2011 UK Fidelity Research Equity discipline 포트폴리오 매니저, 피델리티 2006 – 2008 유럽주식 리서치 애널리스트, 피델리티 학력 및 자격: MBA, IMD Lausanne, Switzerland Post Graduate diploma in Management IIM India Bachelor of Technology in Computer Science, India

라.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운용전문인력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거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합니다.

이러한 헤지 거래는 해외 위탁 자산운용회사 내 외환 헤지거래를 전담하는 팀에서 팀 단위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다만, 헤지거래 여부 및 그 수준을 결정하는 팀과 실제 헤지거래를 위한 매매주문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다른 등 관련된 팀이 다수인 관계로 담당팀을 특정하여 기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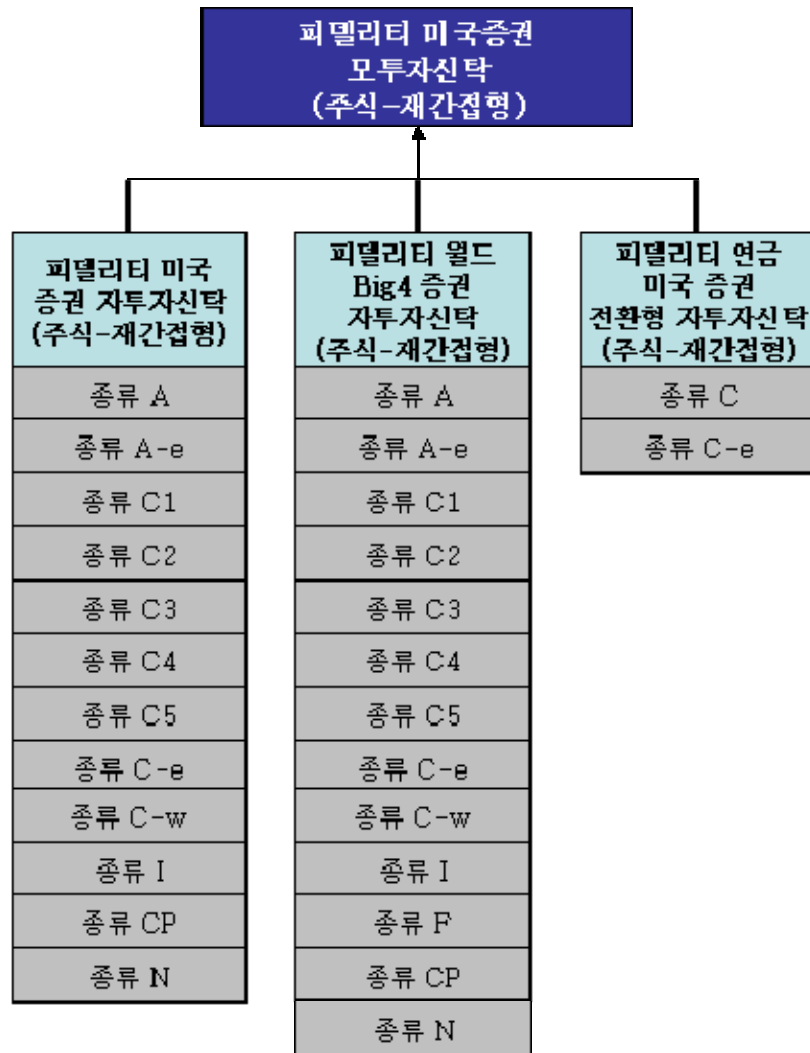
한편, 헤지거래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내용에 따라 소극적(passive)으로만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제2부, 9. 가, (4) 위험관리의 내용 중 (가) 환위험 관리 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설정일 및 가입자격]

구분	펀드코드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종류 A	69071	2007.05.17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종류 A-e	AB476	-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종류 C1	69070	2007.05.17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종류 C2	99749	2011.01.17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 년 이상 된 수익자
종류 C3	99752	2011.01.17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 년 이상 된 수익자
종류 C4	99753	2011.01.17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3 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5	99754	2011.05.23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4 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e	AB477	-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종류 C-w	AB749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전용
종류 I	76545	2007.11.28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100 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구분	펀드코드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500 억원 이상 투자하는 법인, 100 억원 이상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종류 CP	92403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종류 N	69072	2007.05.17	모투자신탁의 초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자산운용회사의 해외계열회사가 투자하는 경우

[수수료]

명칭 (클래스)	수수료율		
	선취 판매 수수료 ¹⁾	후취 판매수 수수료	환매 수수료 ^{2) 3)}
종류 A	1.2% 이하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 A-e	0.6% 이하 ²⁾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 C1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2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3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4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5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e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w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I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P	-	-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N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상기 명시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차등 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주2) 종류 A-e에 적용되는 선취판매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됨.

	최초 설정일	2013.01.01	2014.01.01
종류A-e 선취판매 수수료	0.7% 이하	0.6% 이하	0.5% 이하

주3)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함)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함)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함.

주4)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 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정한 최소 보유기간보다 짧은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됨.

[보수]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종류 A	연 0.10%	연 1.00%	연 0.04%	연 0.025%
종류 A-e	연 0.10%	연 0.45% ¹⁾	연 0.04%	연 0.025%
종류 C1	연 0.10%	연 1.50%	연 0.04%	연 0.025%
종류 C2	연 0.10%	연 1.40%	연 0.04%	연 0.025%
종류 C3	연 0.10%	연 1.30%	연 0.04%	연 0.025%
종류 C4	연 0.10%	연 1.20%	연 0.04%	연 0.025%
종류 C5	연 0.10%	연 1.10%	연 0.04%	연 0.025%
종류 C-e	연 0.10%	연 0.60% ¹⁾	연 0.04%	연 0.025%

종류 C-w	연 0.10%	없음	연 0.04%	연 0.025%
종류 I	연 0.10%	연 0.10%	연 0.04%	연 0.025%
종류 CP	연 0.10%	연 0.50%	연 0.04%	연 0.025%
종류 N	연 0.10%	없음	연 0.04%	연 0.025%

주1) 종류 A-e 및 종류 C-e에 적용되는 판매회사 보수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됨.

	최초 설정일	2013.01.01	2014.01.01
종류A-e 판매회사 보수	연 0.52%	연 0.45%	연 0.37%
종류C-e 판매회사 보수	연 0.70%	연 0.60%	연 0.50%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투자신탁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 발행 수익증권에 투자 - 모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100 % 수준
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투자신탁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 발행 수익증권에 투자 - 모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100 % 수준 -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피델리티 유럽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피델리티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월드 Big 4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투자신탁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 발행 수익증권에 투자 -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90 % 수준			

※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명칭: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등록신청서 최초 제출일: 2009년 4월 16일

구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하고자 함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 펀드 - 미국 성장 펀드 (Fidelity Funds - American Growth Fund)로서,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사업활동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영위되는 회사로 이루어진 집중된 포트폴리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함.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함 -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100 % 수준
3. 주요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모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투자원금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환율변동 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분산투자관련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재간접투자위험, 가격조정정책관련 위험,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유동성위험, 환매위험,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해지위험)이 있음.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및 환율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참고)

※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간접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피델리티 펀드 - 미국 성장 펀드 (Fidelity Funds - American Growth Fund, “피투자펀드”)에 투자합니다.

피델리티펀드는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투자회사 (Umbrella Type Fund)로서, 피델리티 펀드는 다양한 하위 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하위펀드는 고유의 투자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펀드의 자산은 각 하위펀드에 의해 보유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피델리티펀드의 여러 하위펀드 중의 하나인 피델리티 펀드 - 미국 성장 펀드 (Fidelity Funds - American Growth Fund)에 주로 투자하며, 해당 피투자펀드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사업활동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영위되는 회사로 이루어진 집중된 포트폴리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피투자펀드는 룩셈부르크 법률 및 규정, 피델리티 펀드의 정관에 따라 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투자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이므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열람가능한 장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idelity.co.kr)와 피투자펀드 판매회사의 영업점입니다. 피투자펀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피델리티 펀드(Fidelity Funds)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투자펀드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명칭	- 피델리티펀드 (Umbrella Fund) - 하위펀드 명칭: 피델리티 펀드 - 미국 성장 펀드 (Fidelity Funds - American Growth Fund) - 종류(클래스): A-ACC-USD
펀드설정일	- 1997년 7월 7일
자본시장법상 등록일	- 2009년 5월 3일

구분	주요내용
펀드 규모	- USD 354 백만 (2013년 7월말 현재)
외국집합투자업자(외국관리회사)	- FIL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룩셈부르크) 에스에이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	- FIL 펀드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투자목적	- 피투자펀드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사업활동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영위되는 회사로 이루어진 집중된 포트폴리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다만, 피투자펀드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주요투자전략	- 글로벌 리서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시장 상황에 맞는 적극적 종목 선정 - 참조지수에 제약 받지 않고, 투자매력이 높은 종목을 피델리티의 상향식(bottom-up)방식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구축 - 진입장벽이 높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이는 기업 선호 - 기업이익 등 펀더멘털 측면에서 긍정적인 개선세를 보이는 기업에 투자 - 펀더멘털 개선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기업 발굴
주요 투자위험	- 피투자펀드가 속한 피델리티 펀드는 일반위험 (마켓타이밍(Market Timing) 및 빈번한 거래(Excessive Trading) 관련 위험) 및 특수위험 (펀드의 수익률 관련 위험, 가치변동 위험, 펀드 및 클래스의 해지 위험, 법률 및 조세위험, 외환위험, 유동성위험, 가격결정 및 평가위험, 거래상대방 신용 및 결제 위험, 증권 대여 관련 위험, 투자기간(Investment Horizon) 위험, 주식 관련 위험, 채권, 채무증서(Debt Instruments) 및 고정수입(고수익증권 포함) 관련 위험, 투자적격등급 채무성 증권 관련 위험, 낮은 등급/무등급 증권 관련 위험, 신용위험, 유동화/구조화 채무증서 관련 위험, 대출에 대한 투자 관련 위험, 저당관련증권 관련 위험, 국가집중 위험, 투자집중 위험, 중소형주 관련 위험, 이머징시장(러시아 포함) 관련 위험, 중국 A 주식 관련 위험, 주식연계채권(구조화채권) 관련 위험,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관련 위험, 자산배분 관련 위험, 추적오차 관련 위험, 자본금 분배 위험, 금융파생상품 관련 위험, 특정 파생상품 관련 위험, 권선도계약 및 차액계약 관련 위험, 주가지수, 단일 주식, 금리 및 채권 선물 관련 위험, 장내외옵션 관련 위험, 금리스왑 관련 위험, 외환계약 관련 위험, 신용디폴트스왑(CDS)관련 위험, 총수익교환스왑(TRS) 관련 위험, 인플레이션지수스왑(inflation index swap)관련 위험 등)에 노출될 수 있음(2013년 3월 31일 글로벌 투자설명서 기준).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의 투자설명서를 참고바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가.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 펀드 - 미국 성장 펀드 (Fidelity Funds -

American Growth Fund)로서,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사업활동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영위되는 회사로 이루어진 집중된 포트폴리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를 수행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100% 수준입니다. 이러한 환헤지 거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 위탁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여 수행합니다. 그러나 환헤지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당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이 투자신탁은 자산을 최대 100%까지 모두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 83 조 제 3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합니다)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의 상품에 한함)의 방법으로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 법 제 83 조 제 1 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합니다.

1. 아래 제2호에 투자하는 이외의 모든 투자신탁재산은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가.(1).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헤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두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위 8. 가.(1).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모두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1)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5-30 조 제 1 호의 외화증권으로서 이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합니다). 다만, 다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합니다. 가. 피델리티 펀드 – 미국 성장 펀드 (Fidelity Funds – American Growth Fund)
2) 수익증권 등	4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5-30 조 제 1 호의 외화증권으로서 이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수익증권등”이라 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3)장내파생상품	장내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실물자산·통화나 채권·실물자산·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장내파생상품”)
4)장외파생상품		상기 제 3)호에 상응하는 채권, 실물자산 또는 통화와 관련되는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5) 금전차입	법 제 83 조 제 1 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금전의 차입”) 다만,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6) 외국주식	이 투자신탁이 수익자총회에 의하여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외국주식 중 일부를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외국주식 또는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외국주식과 관련하여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후에 취득하게 된 외국주식	
7) 환매대금으로 지급받은 현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현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 현물	
8)기타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 83 조 제 3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함)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정됨). 3. 상기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추가로,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됨)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됨)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을 구성하는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1)호 내지 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		
또한,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 의하여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된 경우, 위 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변경일로부터 1 월간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나. 투자제한

(1) 당해 투자신탁

-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모투자신탁

(가)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3.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i)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ii)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습니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합니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라. 위 본문 (i)과 관련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마. 위 본문 (ii)와 관련하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1.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 나.(2).(가)의 제3호 내지 제6호, 제9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모투자신탁 최초설정일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 의하여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된 날로부터 1월간 나.(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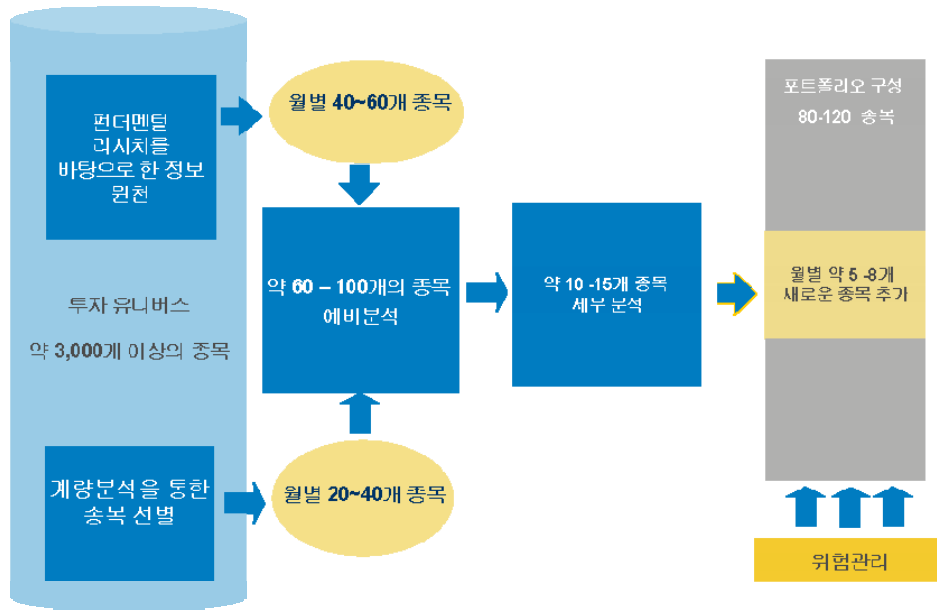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2)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 펀드 - 미국 성장 펀드 (Fidelity Funds - American Growth Fund)로서,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리서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시장 상황에 맞는 적극적 종목 선정
- 참조지수에 제약 받지 않고, 투자매력이 높은 종목을 피델리티의 상향식(bottom-up)방식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구축
- 진입장벽이 높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이는 기업 선호
- 기업이익 등 펀더멘털 측면에서 긍정적인 개선세를 보이는 기업에 투자
- 펀더멘털 개선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기업 발굴



(3) 참조지수

이 투자신탁은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참조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참조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참조지수 = S&P 500 Total Return Index 95% + Call 5%

* S&P 500 Total Return Index: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Standard & Poors가 작성하여 발표한 미국 지역 전반에 상장된 종목들의 주식 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수치

(4) 위험관리

(가) 환위험 관리 전략

모투자신탁은 피투자펀드 내 투자자산 중 매매가 자유로운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위험을 소극적(passive)으로 헤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헤지의 목적은 주로 선물환계약을 이용하여 피투자펀드의 외국통화자산 및 부채를 원화로 환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투자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위험을 가능한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가중심인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특성상, 환거래는 거래 규모를 감안하여 거래 당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환율과 비슷하거나 경쟁력있는 환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수료 등의 어떠한 거래 비용도 가격(환율)에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얻게 되는 어떠한 이득이나 손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된 비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하거나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통화에 대한 환헤지 거래는 기타 통화와 대비한 원화가치의 상승이나 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실행될 것입니다. 환헤지를 실행하게 되면, 매매가 자유로운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비하여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상기 외국통화에 대비하여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환헤지가 실행되는 경우, 헤지 효과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될 것입니다.

모투자신탁의 목표환헤지비용은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최고 100% 수준이지만, 실제 헤지비용은 목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헤지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 중 하나입니다. 성숙한 선진 자본시장과 건실한 투자문화와 함께 유동성이 풍부하고 고도로 분산된 주식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미국 기업들이 회사 경쟁력 면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등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내수기반도 크지만,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수출시장에서 얻고 있습니다.”

관련 국가 현황

※ 다음은 관련 국가 전부에 대한 정보는 아니며, 제시된 정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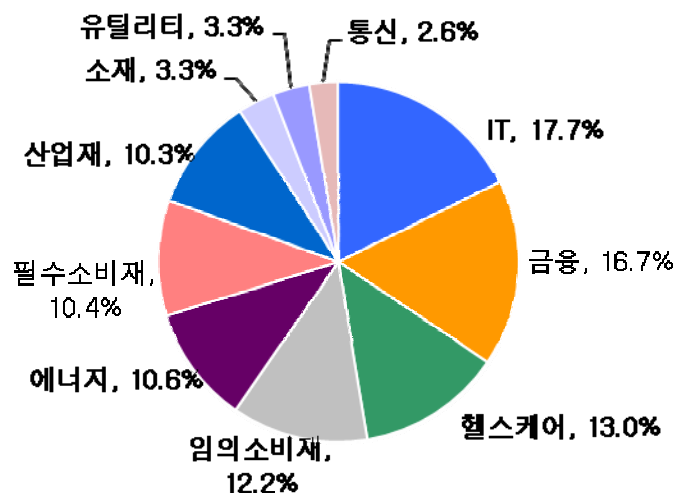
GDP	15 조 6,848 억 달러 (2012 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2.0% (2013 년 7 월)
실업률	7.4% (2013 년 7 월)	화폐	미국달러 (USD)
산업구조	• 각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2년 기준) - 금융(20.2%), 전문서비스(12.4%), 제조업(11.9%), 도소매(11.8%), 교육/의료(8.6%), 정보통신(4.4%) 등		

관련 지역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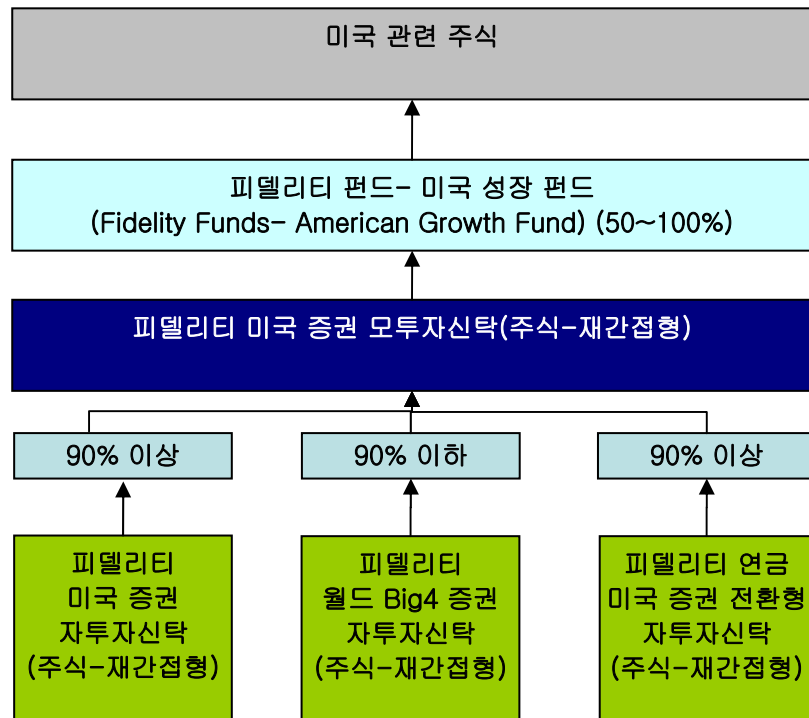
※ 다음은 관련 지역의 국가별 비중으로, 이 투자신탁의 참조지수에 사용된 S&P500 Index 의 업종별 비중 정보입니다. 이 수치는 이 투자신탁 또는 피투자펀드의 투자 비중을 표시한 것은 아니며, 제시된 정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S&P500 Index 업종별 비중

(2013 년 7 월말 기준)



나.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인하여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 펀드 (Fidelity Funds)의 투자설명서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델리티 펀드 (Fidelity Funds)의 투자설명서를 열람하실 수 있는 장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idelity.co.kr)와 피투자펀드 판매회사의 영업점입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주된 투자위험
투자원금손실위험	투자신탁의 투자 원금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투자자들을 제외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외국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구 분	주된 투자위험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몇몇 투자신탁은 가격하락 및 자본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고수익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등급 유가증권, 등급이 낮은 유가증권 및 이에 상응하는 등급이 없는 유가증권은 등급이 높은 유가증권 보다 수익 및 가격의 변동 폭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위험을 헤지하고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100% 수준이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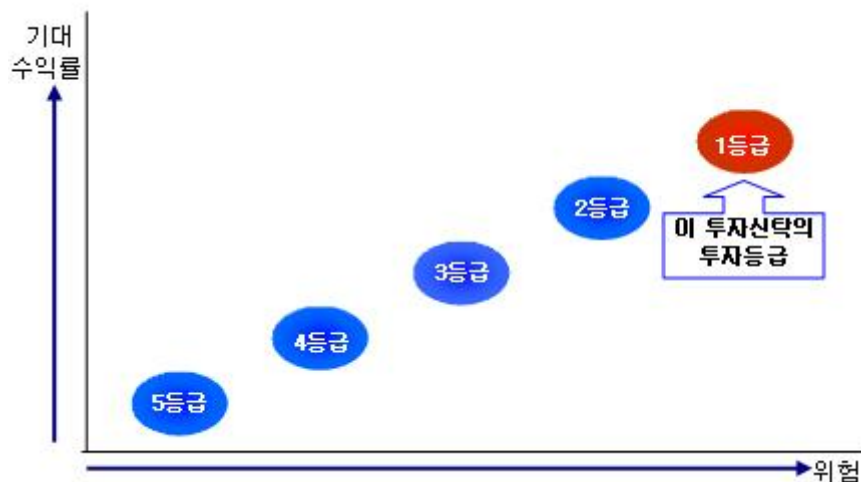
나. 특수위험

구 분	주된 투자위험
분산투자 관련위험	오직 한 국가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투자자산에 대한 거래비용이 다른 국가에서 보다 더 높고 유동성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현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 또는 투자형태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특히 대규모 거래)라고 할지라도 대형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투자신탁의 운용비용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투자신탁 선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어느 한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적어지는 대신에 많은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권 가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옵션매도로 인한 손실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는 투자신탁재산에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조정정책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가격조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펀드의 대량 매입과 환매에 관련되는 비용을 당일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장기 투자자들을 희석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펀드의 기준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합니다. 즉,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특정일에 투자자의 거래 금액 및 유형에 따라 기준가가 인위적으로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인위적인 조정에 따라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가격조정정책으로 인한 기준가의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주된 투자위험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위험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적용일 및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높은 시장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이러한 투자신탁은 투자자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중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위험 등급 분류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위험 등급]

위험등급	위험수준	내용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전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초과)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후순위채권, 투기등급 채무증권(BB+등급 이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같은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전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이하)

		과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과 유사한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등급	중간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보다 낮은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과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 REITs, 과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고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다만, 고위험자산을 기초로 하는 인덱스펀드(ETF 포함)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자체적인 기준 및 운용전략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 2)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중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주 3)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저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주 4)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해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 5) 위에 명시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사 자체 내부 위험등급 심의위원회(상품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위험분류 및 위험등급 범위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대한 절대적인 분류기준은 아닙니다.

※ 시간경과에 따라 투자대상이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실제 편입비를 고려하여 향후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0 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과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수익증권의 매입

(가) 투자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영업일에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업일의 오후 5시까지 수령된 주문 및 자금은 해당 영업일에 처리되며, 영업일의 오후 5시 경과 이후에 수령된 주문 및 자금은 다음 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익증권매수청구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소정의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실 또는 결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최소매입금액: 이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업자가 최소매입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수익증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 종류 A 수익증권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 종류 A-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종류 C1 수익증권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 된 수익자
-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 된 수익자
-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된 수익자
- 종류 C5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 된 수익자
- 종류 C-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종류 C-w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 전용
- 종류 I 수익증권 :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500억원 이상 투자하는 법인,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 종류 CP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 종류 N 수익증권 : 모투자신탁의 초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해외계열회사가 투자하는 경우

(라) 투자자가 매입하는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당일 포함)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판매가격은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오후 5시 경과 이후에 수령한 매입 주문 및 자금납입은 판매회사가 주문을 실제로 수령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처리됩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후
매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begin{array}{ccccc} D & & D+1 & & D+2 \\ & & & & \\ \text{자금납입} & & & & \text{수익증권 매입} \\ \text{(5시 이전)} & & & & \text{(D+2 기준가 적용)} \end{array}$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begin{array}{ccccccc} D & & D+1 & & D+2 & & D+3 \\ & & & & & & \\ \text{자금납입} & & & & & & \text{수익증권 매입} \\ \text{5시 경과후} & & & & & & \text{(D+3 기준가 적용)} \end{array}$

(마)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제2부.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가격의 산정을 위해 외화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이하 "평가시점"이라 합니다)에 있어서의 최종시가(또는 "제2부.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일의 공정가액)를 사용해 해당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2) 매입관련 유의사항

(가) 과도한 매매의 제한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를 목표로 설정 및 운용되며 과도한 매매를 지양합니다. 투자재산에 대한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전략을 방해하고 운용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신탁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시차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자, 또는 당해 투자자가 단기매매나 과도한 매매 패턴을 보이거나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방해가 되거나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투자자들의 수익권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90 일미만 동안 보유하는 거래는 과도한 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투자업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과도한 매매를 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를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거래내역 및 공동으로 관리되는 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 (가)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당해 투자신탁 신탁계약, 동 설명서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나)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각 영업일에 오후 5시까지 수익증권 환매 주문을 수령합니다. 판매회사가 오후 5시 경과 이후에 수익증권 환매요청을 수령한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집합투자업자는 모두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자금으로 환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날에 모두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라)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나)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마)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익증권의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자가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청구한 날(판매회사의 영업일임. 당일 포함)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환매대금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포함)로부터 제 8 영업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환매대금은 관련되는 환매수수료 및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10 영업일까지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오후 5 시 경과 후에 수령한 환매청구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실제로 청구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처리됩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실제로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제 9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11 영업일까지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후
----	----------	-----------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후
환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제8영업일(D+7)에 환매대금 지급 D D+2 D+7 환매청구 (5시 이전) 기준가 적용 환매대금 지급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 지급 D D+3 D+8 환매청구 (5시 경과후) 기준가 적용 환매대금 지급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각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포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른 수익증권환매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익증권환매청구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명칭(클래스)	지급비율 (연간, %)
	환매 수수료
종류 A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 A-e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 C1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2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3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4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5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e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w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I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CP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N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합니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정한 최소 보유기간보다 짧은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 환매관련 유의사항

(가)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기준일의 제6영업일(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 전의 날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나)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환매가 연기된 경우
 - 다.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라. 전쟁, 홍수, 폭풍, 테러 또는 기타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이내에 환매연기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환매연기일로부터 6 주 이내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②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⑥항 2.호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릅니다).
 1.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과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일부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 ③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⑥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수익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환매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제⑤항 및 제⑥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 환매연기 기간 동안 매수 및 환매신청의 처리

상기(나)에 따른 환매연기 이후, 환매연기 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제1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상기(나)에 따른 환매연기 기간 동안에는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 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증권의 일부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마)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 전환

(1) 수익증권의 전환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함)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①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1

수익증권은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 ②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2 수익증권은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 ③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3 수익증권은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 ④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4 수익증권은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 2011년 1월 17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종류별 수익증권 보유기간의 산정은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매수한 일자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수익증권의 전환관련 유의사항

- (가) 위의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 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됩니다.
- (나) 위의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다) 위의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 또는 환매청구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이 전환되지 아니합니다.
- (라) “제 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① 위의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②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 “제 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정한 최소 보유기간보다 짧은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당해 종류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집합투자업자는 통보 받은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일 공시합니다.

구분	내용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자신들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준가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두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결정되며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모두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단,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각 종류 수익증권간 부과되는 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각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법 제238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 단 변동 가능함)의 최종시가 또는 평가일의 공정가액(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을 사용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자산의 종류	평 가 방 법
상장주식, 장내파생상품 등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에 공표된 가격
비상장 주식, 채무증권, 장외파생상품 등	취득가격, 거래가격 및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정보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격, 환율 등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부실화된 자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1) 당해 투자신탁

명칭 (클래스)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¹⁾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2) 3)}	전환수수료
종류 A	1.2 % 이하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
종류 A-e	0.6%이하 ²⁾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
종류 C1	-	-	90일 미만:	-

명칭 (클래스)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¹⁾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²⁾³⁾	전환수수료
			이익금의 70%	
종류 C2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3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4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5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e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w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I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P	-	-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종류 N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부과기준	수익증권 매입시	-	환매대금지급시 (판매회사는 환매수수 료를 펀드에 반환함)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상기 명시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차등 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주2) 종류 A-e에 적용되는 선취판매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됨.

	최초 설정일	2013.01.01	2014.01.01
종류A-e 선취판매 수수료	0.7% 이하	0.6% 이하	0.5% 이하

주3)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함)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함)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함.

주4)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 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에 정한 최소 보유기간보다 짧은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됨.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수수료]

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전환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모투자신탁

구분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고
수익자가	선(후)취	없음	해당없음	여기서 “수익자”란 모투자신탁의

구분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고
부담하는 비용	판매수수료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투자신탁을 말함
	환매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가 부과됩니다.
-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에 적용되는 판매회사 보수의 경우, 투자자 별로 이미 경과한 투자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하되는 체감식 방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판매회사의 보수가 인하된 것으로서, 투자자별 최초 매입일 기준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각각의 종류(Class)로 전환됩니다.
- 종류 A-e 및 종류 C-e에 적용되는 판매회사 보수의 경우, 2013년 1월 1일 및 2014년 1월 1일자로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이 발생합니다.
-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증권거래비용은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단, 2013년 8월 28일까지 발생분에 한함)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하는 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위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및 투자신탁과 관련한 납세신고서 작성비용
2.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3.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4.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고의, 과실, 신탁계약 위반 없이 투자신탁 관련 소송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을 포함)
5.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6.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단, 2013년 8월 28일까지 발생분에 한함)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보수 및 비용]

(2013년 7월말 기준)

구 분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비용 비율	합성 총보수비 율	증권거래 비용
지급비율	종류 A	0.1000	1.0000	0.0400	0.0250	0.0000	1.1650	1.9007	0.0000

구 분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비용 비율	합성 총보수비 율	증권거래 비용
(연간, %)	종류 A-e	0.1000	0.4500 ¹⁾	0.0400	0.0250	0.0000	0.6150	1.3150	0.0000
	종류 C1	0.1000	1.5000	0.0400	0.0250	0.0000	1.6650	2.3990	0.0000
	종류 C2	0.1000	1.4000	0.0400	0.0250	0.0000	1.5650	2.3036	0.0000
	종류 C3	0.1000	1.3000	0.0400	0.0250	0.0000	1.4650	2.1943	0.0000
	종류 C4	0.1000	1.2000	0.0400	0.0250	0.0000	1.3650	2.1035	0.0000
	종류 C5	0.1000	1.1000	0.0400	0.0250	0.0000	1.2650	1.9992	0.0000
	종류 C-e	0.1000	0.6000 ¹⁾	0.0400	0.0250	0.0000	0.7650	1.4650	0.0000
	종류 C-w	0.1000	0.0000	0.0400	0.0250	0.0000	0.1650	0.8650	0.0000
	종류 I	0.1000	0.1000	0.0400	0.0250	0.0000	0.2650	1.0022	0.0000
	종류 CP	0.1000	0.5000	0.0400	0.0250	0.0000	0.6650	1.3650	0.0000
	종류 N	0.1000	0.0000	0.0400	0.0250	0.0000	0.1650	0.8650	0.0000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 ※ 기타 비용은 증권에의 위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단, 2013년 8월 28일까지 발생분에 한함)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 비용을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율(연 0.70%로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주1)종류 A-e 및 종류 C-e에 적용되는 판매회사 보수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됨.

	최초 설정일	2013.01.01	2014.01.01
종류A-e 판매회사 보수	연 0.52%	연 0.45%	연 0.37%
종류C-e 판매회사 보수	연 0.70%	연 0.60%	연 0.50%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총보수 및 비용]

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구 분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비용 비율	합성 총보수비 율	증권거래 비용
지급비율 (연간, %)	종류 C	0.1000	0.9600	0.0400	0.0250	0.0000	0.9600	1.6600	0.0000
	종류 C-e	0.1000	0.4800	0.0400	0.0250	0.0000	0.6450	1.3450	0.0000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 ※ 기타 비용은 증권에의 위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단, 2013년 8월 28일까지 발생분에 한함)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 비용을 모두자신탁의 투자비용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눈 값과 모두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율(연 0.70%로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2) 모두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모두자신탁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모두자신탁에는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이 발생합니다.
- 모두자신탁에는 증권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및 비용]

(2013년 7월말 기준)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두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집합투자업자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판매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수탁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기타 비용	0.0196	사유발생시
총 보수·비용 비율	0.0196	
합성총보수비율	0.7196	
증권거래비용	0.0000	사유발생시

- ※ 기타 비용은 증권에의 위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신탁계약에서 기재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 보수·비용 비율과 이 투자신탁이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율(연 0.70%로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 시 예상 비용]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비용은 실제운용비용 및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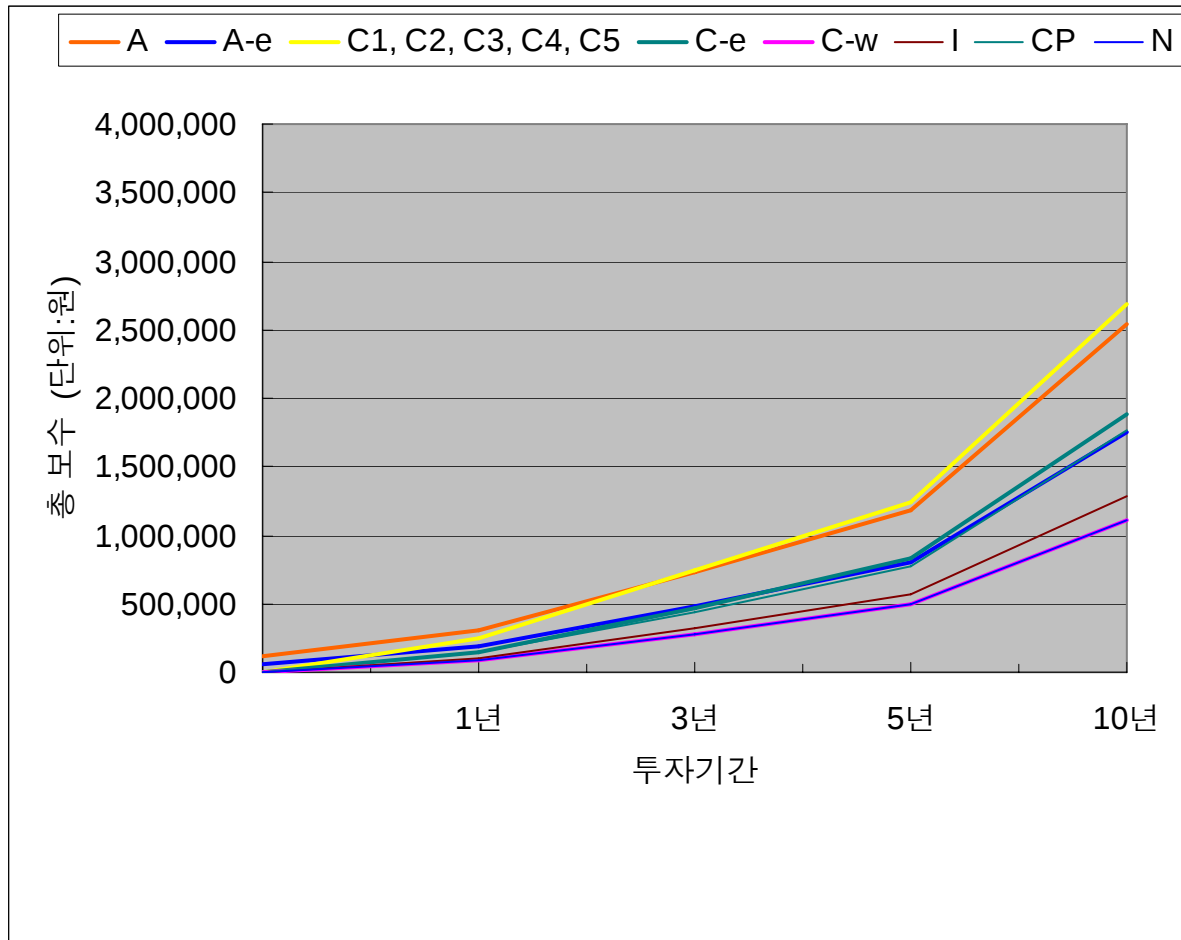
종류	투자기간	1 년	3 년	5 년	10 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6,558	490,512	770,497	1,602,530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11,063	725,390	1,182,185	2,539,649
종류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2,295	257,157	405,841	847,689
종류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93,608	481,970	799,889	1,744,652
종류 C1, C2, C3, C4, C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0,640	504,583	824,113	1,738,407
종류 C1, C2, C3, C4, C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45,865	741,695	1,240,302	2,685,247

종류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8,402	247,163	433,222	986,134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0,143	473,325	829,633	1,888,479
종류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910	53,310	93,440	212,696
종류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8,651	279,472	489,852	1,115,041
종류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7,159	85,619	150,070	341,602
종류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2,712	323,800	567,549	1,291,900
종류 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8,154	214,854	376,591	857,228
종류 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9,894	441,016	773,003	1,759,573
종류 N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910	53,310	93,440	212,696
종류 N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8,651	279,472	489,852	1,115,041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예상 비용을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 ※ 종류 A-e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판매보수율이 기간별로 상이하며 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은 상기 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판매보수율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 ※ 종류 C-e의 경우 판매보수율이 기간별로 상이하며 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은 상기 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설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선취판매수수료는 종류A 및 종류 A-e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종류별 총보수 비용 추이 및 총보수 비용이 일치 하는 시점의 선형그래프]

(2013년 7월말 기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이익 등의 배분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제반 조세 등을 공제한 후 수익자에게 분배하되, 수익자는, 수익자가 달리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신탁계약 제14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또한, 수익자가 이익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당일포함) 제9영업일 전에 판매회사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분배관련 유의사항

(가)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시 상환금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등을 공제한 후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합니다. 판매회사는 해당 모든 조세 및 환매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모두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두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이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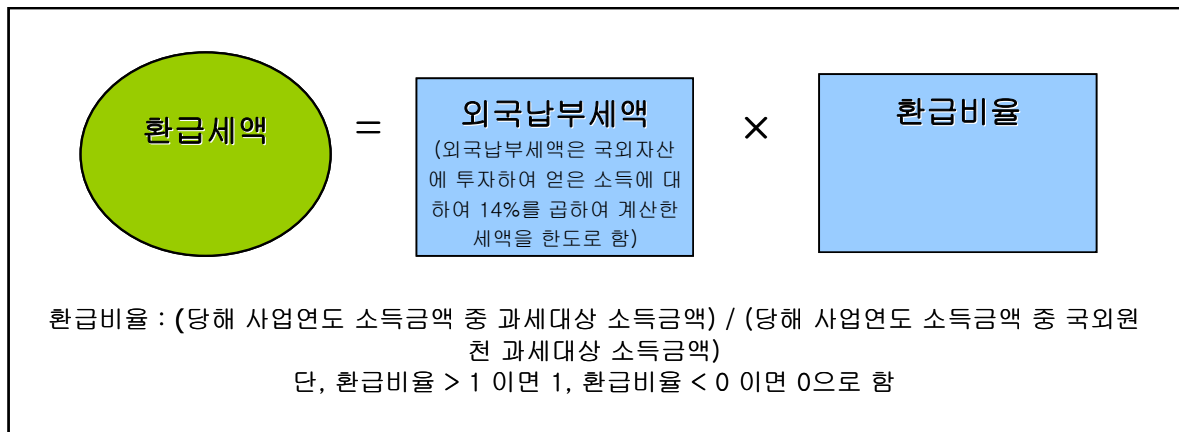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일반적으로 모든 투자신탁에 대해서 참고용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세법의 변경, 과세 당국의 해석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다음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정확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범위의 한도 내에서 국세청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 및 모투자신탁이 이와 같은 매매·평가 손익을 자투자신탁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 및 모투자신탁이 이와 같은 매매·평가 손익을 자투자신탁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는 이 또한 수익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한(해외주식 등->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투자신탁입니다.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을 한도로 차감하는 조치는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되기 이전의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이전과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명시적 해석이 없어,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제2부. 14. 나. 과세 부분)의 “외국상장주식”이란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집합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제외함)을 뜻합니다. 한편, “매매·평가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 등 주식가격의 변동과 관련 없는 매매·평가 손익은 제외되며,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익을 전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수익자는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나)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보다 큰 경우(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부분이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임)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8%, 지방소득세 3.8%)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한도법인세율 22%, 지방소득세 2.2)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 회계 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삼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6기 및 제5기의 각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다만, 제7기(반기)는 반기 재무정보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요약재무정보	제 7 기(반기)	제 6 기	제 5 기
	20130630	20121231	20111231
I. 운용자산	24,968,065,349	13,685,610,229	24,125,132,449
증권	24,733,010,211	13,552,901,430	23,889,620,718
현금 및 예치금	235,055,138	132,708,799	235,511,731
II. 기타자산	253,263,014	115,693,786	265,291,682
자산총계	25,221,328,363	13,801,304,015	24,390,424,131
II. 기타부채	272,288,088	133,619,068	326,485,824
부채총계	272,288,088	133,619,068	326,485,824
I. 원본	26,734,771,645	18,014,515,401	35,264,311,889
II. 수익조정금	342,558,739	4,619,241,185	-6,447,930,048
III. 이익잉여금	-2,128,290,109	-8,966,071,639	-4,752,443,534
자본총계	24,949,040,275	13,667,684,947	24,063,938,307
I. 운용수익	2,315,740,499	2,547,346,710	-1,678,707,855
이자수익	1,882,845	5,001,665	7,401,740
매매/평가차익(손)	2,311,876,938	2,541,219,810	-1,705,874,728
기타이익	1,980,716	1,125,235	19,765,133
II. 운용비용	85,755,586	313,044,767	530,570,723
관련회사보수	84,754,967	308,425,827	526,529,503
기타비용	1,000,619	4,618,940	4,041,220
III. 당기 순이익	2,229,984,913	2,234,301,943	-2,209,278,578
* 매매회전율	0	0	0
* 매매수수료	0	0	0

※ 매매 수수료는 손익계정항목이 아니므로 난외계정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대차대조표	제 7 기(반기)	제 6 기	제 5 기
	20130630	20121231	20111231
I. 운용자산	24,968,065,349	13,685,610,229	24,125,132,449
(1) 현금 및 예치금	235,055,138	132,708,799	235,511,731
현금 및 현금성자산	235,055,138	132,708,799	235,511,731
(3) 유가증권	24,733,010,211	13,552,901,430	23,889,620,718
수익증권	24,733,010,211	13,552,901,430	23,889,620,718

II. 기타자산	253,263,014	115,693,786	265,291,682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52,848,427	115,411,439	264,726,020
미수이자	414,587	282,347	565,662
자산총계 (I + II)	25,221,328,363	13,801,304,015	24,390,424,131
II. 기타부채	272,288,088	133,619,068	326,485,824
해지미지급금	248,068,808	111,478,249	267,556,098
수수료미지급금	24,167,010	22,101,799	57,992,766
기타미지급금	52,270	39,020	936,960
부채총계 (I + II)	272,288,088	133,619,068	326,485,824
I. 원본	26,734,771,645	18,014,515,401	35,264,311,889
원본액	26,734,771,645	18,014,515,401	35,264,311,889
II. 이익잉여금	-2,128,290,109	-8,966,071,639	-4,752,443,534
이월이익잉여금	-4,358,275,022	-11,200,373,582	-2,543,164,956
당기순이익	2,229,984,913	2,234,301,943	-2,209,278,578
III. 설정조정금	-1,601,673,882	-2,387,606,840	-17,373,807,909
IV. 해지조정금	1,944,232,621	7,006,848,025	10,925,877,861
자본총계 (I + II + III + IV)	24,949,040,275	13,667,684,947	24,063,938,307
[종류(판매)펀드별 순자산]			
미국 증권 자 C1 (주식-재간접형)	1,814,147,379	176,276,385	3,247,185,112
미국 증권 자 A (주식-재간접형)	10,687,221,651	10,984,091,222	19,499,206,161
미국 증권 자 I (주식-재간접형)	10,368,789,191		200,171,962
미국 증권 자 C2 (주식-재간접형)	173,202,511	1,506,824,221	257,668,239
미국 증권 자 C3 (주식-재간접형)	982,327,045	141,085,124	19,871,153
미국 증권 자 C4 (주식-재간접형)	15,860,257	13,443,229	586,807,086
미국 증권 자 C5 (주식-재간접형)	907,492,241	845,964,766	253,028,594
[종류(판매)펀드별 좌수]			
미국 증권 자 C1 (주식-재간접형)	2,182,387,242	243,797,596	4,900,422,594
미국 증권 자 A (주식-재간접형)	12,362,094,599	14,643,676,725	28,507,826,892
미국 증권 자 I (주식-재간접형)	10,000,000,000		281,129,796
미국 증권 자 C2 (주식-재간접형)	207,800,743	2,079,673,355	388,435,287
미국 증권 자 C3 (주식-재간접형)	1,175,805,975	194,362,050	29,930,577
미국 증권 자 C4 (주식-재간접형)	18,939,951	18,485,477	883,114,835
미국 증권 자 C5 (주식-재간접형)	787,743,135	834,520,198	273,451,908
[종류(판매)펀드별 기준가격]			
미국 증권 자 C1 (주식-재간접형)	831.27	723.04	662.63
미국 증권 자 A (주식-재간접형)	864.52	750.09	683.99
미국 증권 자 I (주식-재간접형)	1,036.88	1,000.00	712.03
미국 증권 자 C2 (주식-재간접형)	833.50	724.55	663.35
미국 증권 자 C3 (주식-재간접형)	835.45	725.89	663.91
미국 증권 자 C4 (주식-재간접형)	837.40	727.23	664.47
미국 증권 자 C5 (주식-재간접형)	1,152.02	1,013.71	925.31

※ 종류형 펀드의 경우, 대차대조표는 전체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좌수 및 기준가격등은 종류(판매)펀드별

로 작성되었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손익계산서	제 7 기(반기)	제 6 기	제 5 기
	20130101-20130630	20120101-20121231	20110101-20111231
I. 운용수익	2,315,740,499	2,547,346,710	-1,678,707,855
(1) 투자수익	3,863,561	6,126,900	27,166,873
이자수익	1,882,845	5,001,665	7,401,740
기타이익	1,980,716	1,125,235	19,765,133
(2) 매매차익 과 평가차익	2,311,921,531	2,542,123,467	226,723,499
수익증권매매차익	2,311,921,531	2,542,123,467	226,723,499
(3) 매매차손 과 평가차손	44,593	903,657	1,932,598,227
수익증권매매차손	44,593	903,657	1,932,598,227
II. 운용비용	85,755,586	313,044,767	530,570,723
운용수수료	8,509,495	95,150,597	222,774,142
판매수수료	70,714,309	200,635,975	284,819,589
수탁수수료	3,403,794	7,577,019	11,138,693
사무수탁수수료	2,127,369	5,062,236	7,797,079
감사인보수비	763,639	1,540,000	2,200,000
기타비용	236,980	3,078,940	1,841,220
III. 당기순이익 (I - II)	2,229,984,913	2,234,301,943	-2,209,278,578
* 총좌수	26,734,771,645	18,014,515,401	35,264,311,889
* 당기순이익(좌당 또는 1000 좌당)	83.41	124.03	-62.65

※ 종류형 펀드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단순계산값(순이익 합계/종류(판매)좌수 합계) 입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백만)

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101 - 20111231	7,938	7,938	60,108	47,464	35,757	27,662	32,288	27,740
20120101 - 20121231	32,288	32,288	8,276	6,693	24,107	19,668	16,457	19,314
20130101 - 20130630	16,457	16,457	18,609	17,299	9,159	8,329	25,907	25,427

종류 C1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101 - 20111231	2,099	2,099	7,801	5,537	5,000	3,409	4,900	4,227
20120101 - 20121231	4,900	4,900	443	313	5,100	3,648	244	1,565
20130101 - 20130630	244	244	2,311	1,856	372	300	2,182	1,800

종류 A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101 - 20111231	5,908	5,908	46,769	34,363	24,170	17,222	28,508	23,049
20120101 - 20121231	28,508	28,508	3,347	2,462	17,211	12,827	14,644	18,142
20130101 - 20130630	14,644	14,644	4,615	3,929	6,897	5,668	12,362	12,905

종류 I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101 - 20111231	524	524	7,538	5,764	7,780	5,907	281	381
20120101 - 20121231	281	281	41	32	322	242	0	71
20130101 - 20130630	0	0	10,000	10,000	0	0	10,000	10,071

종류 N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90101 - 20091231	0	0	0	0	0	0	0	0
20100101 - 20101231	0	0	0	0	0	0	0	0
20110101 - 20110630	0	0	0	0	0	0	0	0

종류 C2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117 - 20111231	0	0	520	354	132	90	388	263
20120101 - 20121231	388	388	4,550	3,259	2,859	2,038	2,080	1,609
20130101 - 20130630	2,080	2,080	263	209	2,135	1,647	208	642

종류 C3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117 - 20111231	0	0	969	675	940	659	30	16
20120101 - 20121231	30	30	209	152	45	32	194	150
20130101 - 20130630	194	194	1,760	1,360	778	624	1,176	931

종류 C4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117 - 20111231	0	0	1,542	1,080	659	467	883	613
20120101 - 20121231	883	883	33	23	898	640	18	267
20130101 -	18	18	36	27	35	28	19	18

20130630								
종류 C5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523 - 20111231	0	0	274	268	1	1	273	267
20120101 - 20121231	273	273	610	605	49	49	835	829
20130101 - 20130630	835	835	7	7	65	72	788	781

주) 기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단위: 일)

구분	기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종류 C5	20130101 - 20130630	20,339,903,211 / 20,339,903,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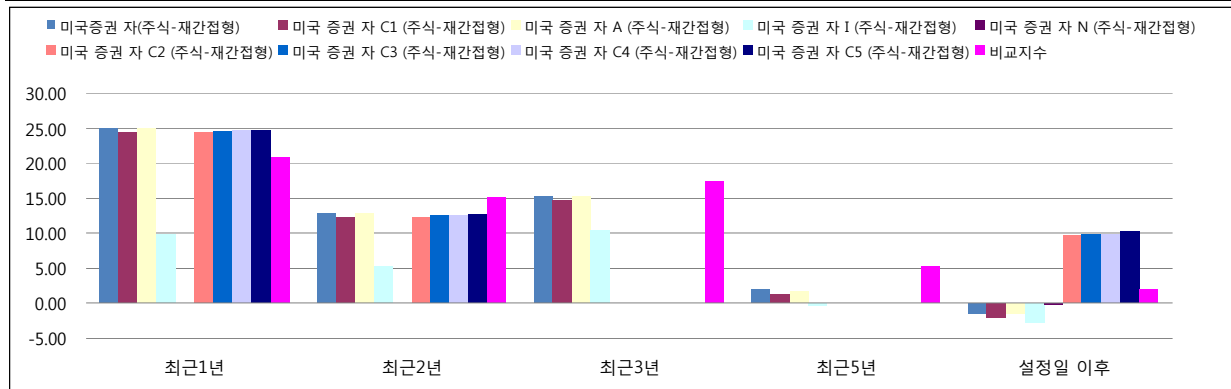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의 투자실적은 과세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연도	최근 1 년 2012.08.01 ~ 2013.07.31	최근 2 년 2011.08.01 ~ 2013.07.31	최근 3 년 2010.08.01 ~ 2013.07.31	최근 5 년 2008.08.01 ~ 2013.07.31	설정일 이후 2007.05.17 ~ 2013.07.31
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25.00	12.79	15.24	1.87	-1.42
종류 C1	24.29	12.23	14.67	1.26	-2.03
종류 A	24.92	12.79	15.24	1.86	-1.41
종류 I	9.91	5.37	10.46	-0.32	-2.66
종류 N	0.00	0.00	0.00	0.00	-0.14
종류 C2	24.43	12.35			9.68
종류 C3	24.56	12.46			9.79
종류 C4	24.68	12.56			9.89
종류 C5	24.80	12.69			10.17
참조지수	20.71	15.07	17.36	5.43	1.96



1) 참조지수= S&P 500 Total Return Index Hedged to KR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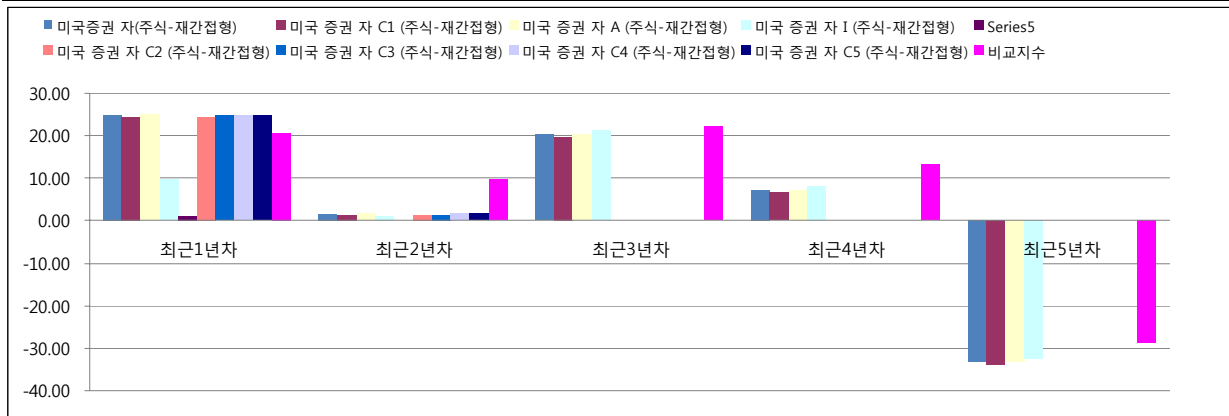
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3) 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평균 하였음, 다만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평균 한 수익률 편차가 커질 수 있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연도	최근 1 년차 2012.08.01 ~ 2013.07.31	최근 2 년차 2011.08.01 ~ 2012.07.31	최근 3 년차 2010.08.01 ~ 2011.07.31	최근 4 년차 2009.08.01 ~ 2010.07.31	최근 5 년차 2008.08.01 ~ 2009.07.31
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25.00	1.77	20.29	7.37	-33.22
종류 C1	24.29	1.33	19.73	6.52	-33.74
종류 A	24.92	1.84	20.32	7.28	-33.22
종류 I	9.91	1.02	21.39	8.24	-32.54
종류 N	0.00	0.00	0.00	0.00	0.00
종류 C2	24.43	1.44	0.18		
종류 C3	24.56	1.53	0.24		
종류 C4	24.68	1.63	0.29		
종류 C5	24.80	1.76			
참조지수	20.71	9.69	22.07	13.22	-28.81



1) 참조지수= S&P 500 Total Return Index Hedged to KRW

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3)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기간수익률을 기재함. 다만 각 투자신탁 및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상기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2013년 3월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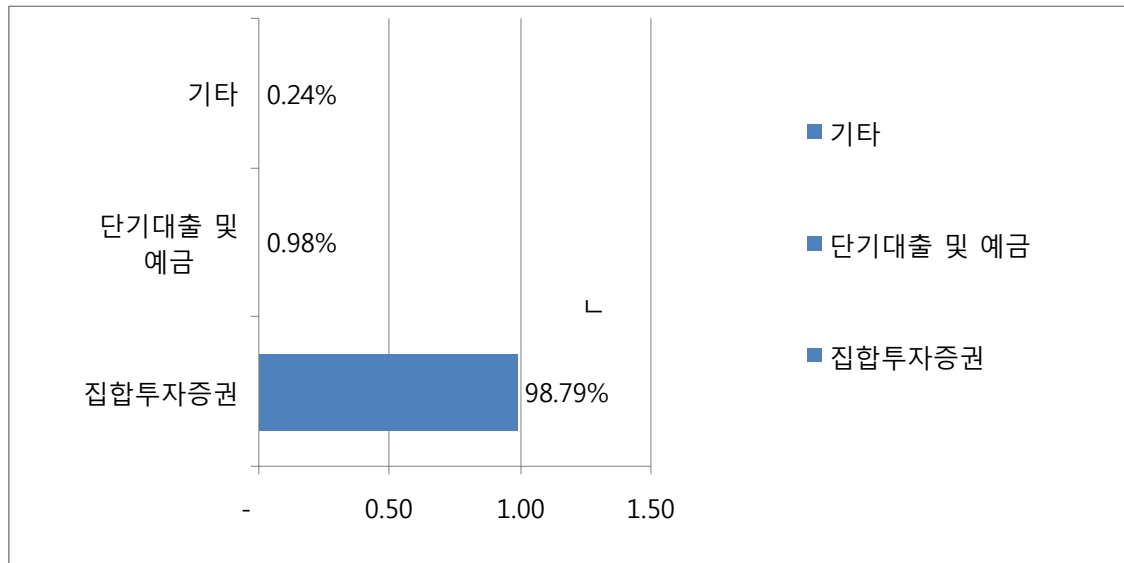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3년 7월말 기준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통화별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한국 원	0 (0.00)	0 (0.00)	0 (0.00)	54,196 (98.79)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535 (0.98)	129 (0.24)	54,860 (100.00)
합계	0 (0.00)	0 (0.00)	0 (0.00)	54,196 (98.79)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535 (0.98)	129 (0.24)	54,860 (100.00)

주)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임.



[모투자신탁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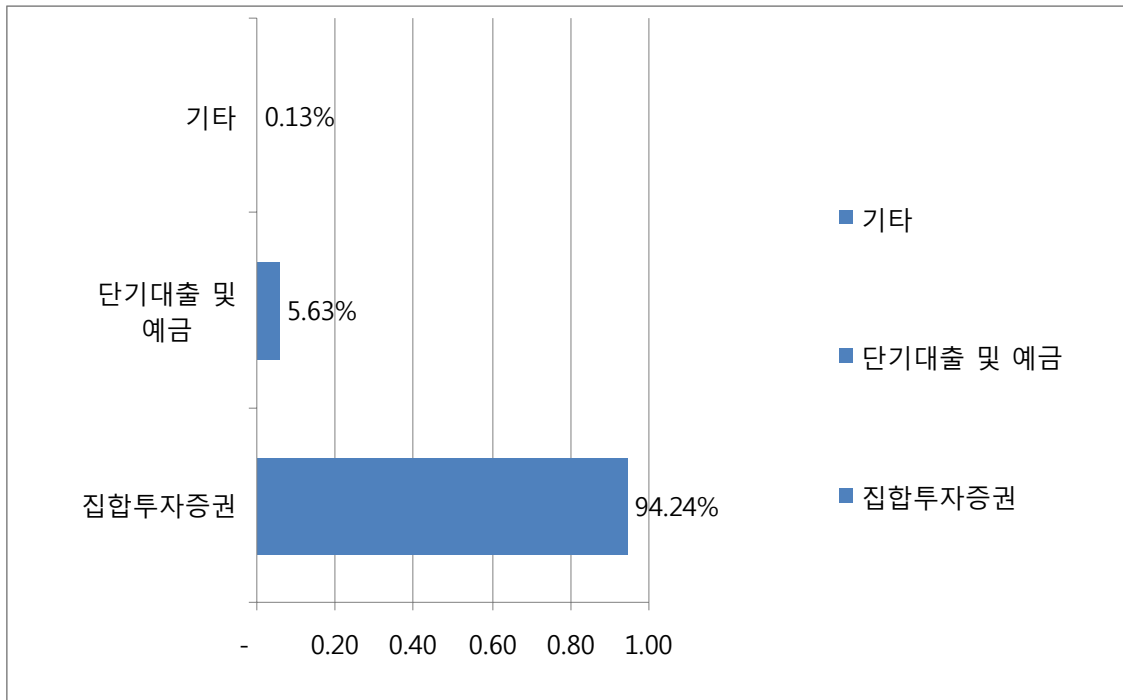
2013년 7월말 기준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단위: 백만원)

통화별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 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유로	0	0	0	0	0	0	0	0	0	1	0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홍콩 달러	0	0	0	0	0	0	0	0	0	2	0	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일본 엔	0	0	0	0	0	0	0	0	0	1	0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한국 원	0	0	0	0	0	0	0	0	0	3,174	79	3,25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38)	(0.13)	(5.51)
싱가포르 달러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미국 달러	0	0	0	55,640	0	0	0	0	0	144	0	55,784
	(0.00)	(0.00)	(0.00)	(94.24)	(0.00)	(0.00)	(0.00)	(0.00)	(0.00)	(0.24)	(0.00)	(94.48)
캐나다 달러	0	0	0	0	0	0	0	0	0	1	0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0	0	0	55,640	0	0	0	0	0	3,323	79	59,042
	(0.00)	(0.00)	(0.00)	(94.24)	(0.00)	(0.00)	(0.00)	(0.00)	(0.00)	(5.63)	(0.13)	(100.00)

주)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임. 다만 위 자산 구성 현황은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이전의 현황정보이므로, 변경 후 자산구성현황은 위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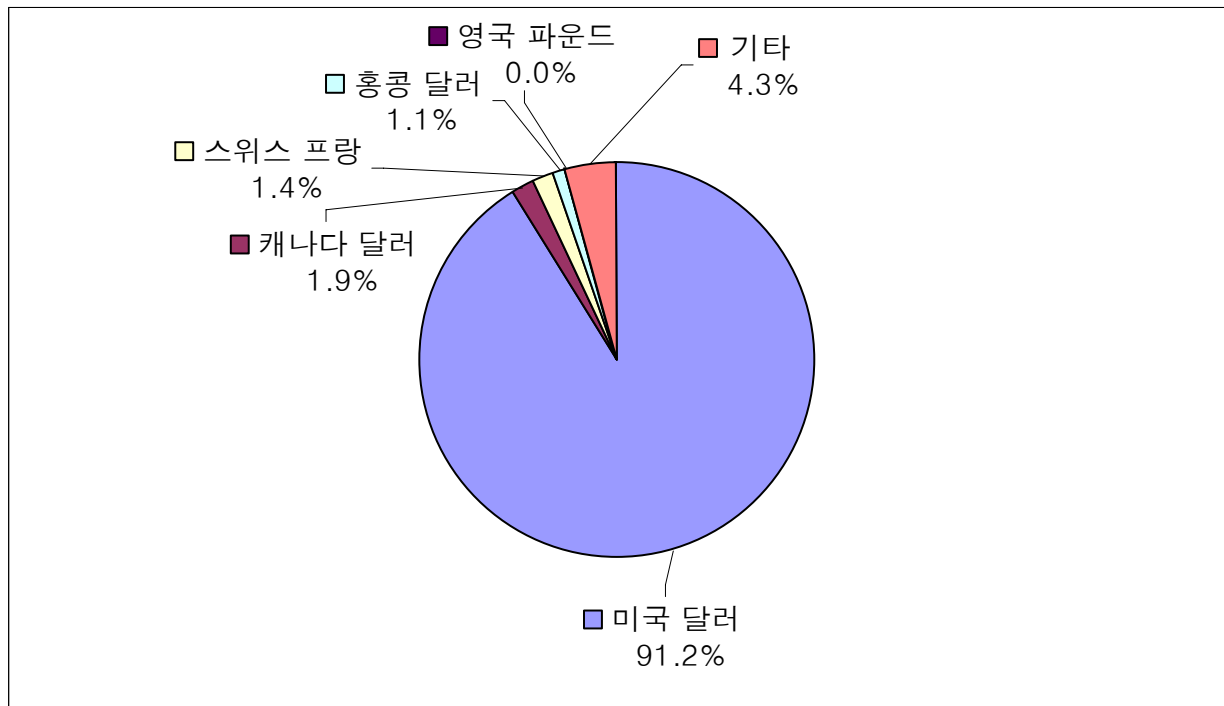


[피투자펀드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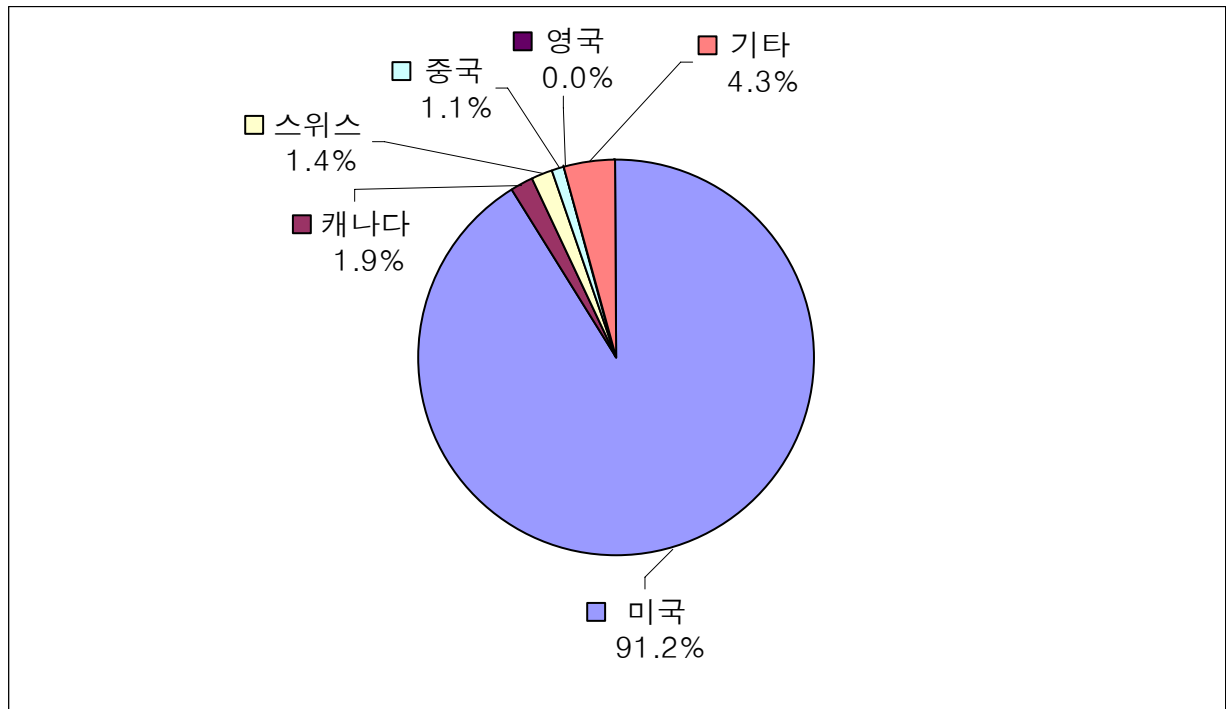
2013년 7월말 기준으로 피투자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델리티 펀드 - 미국 성장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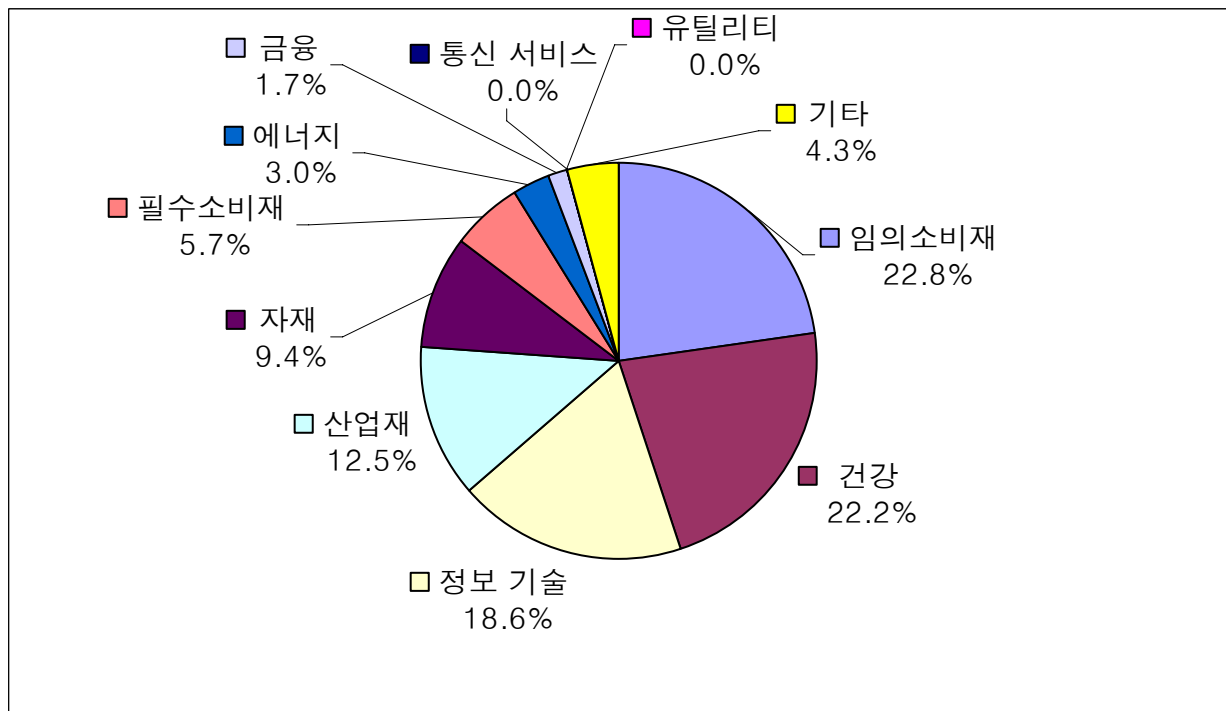
통화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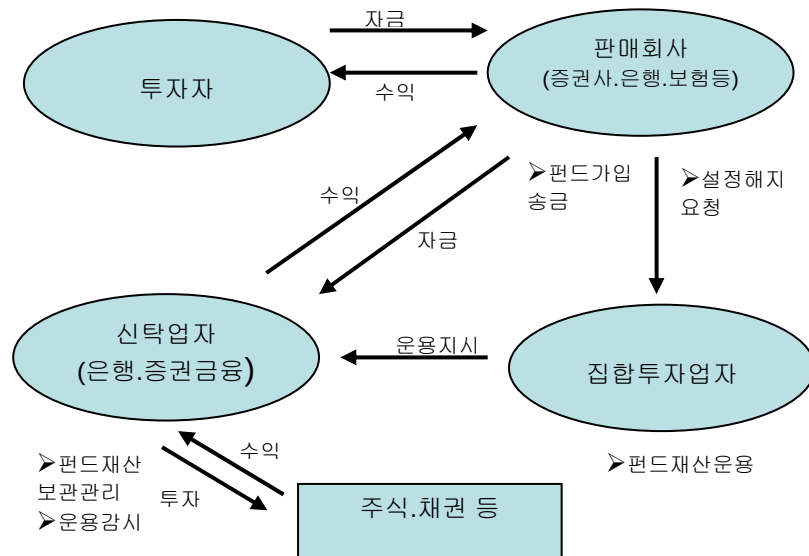
국가별 비중



업종별 비중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우편번호 100-101 대한민국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6층, 전화번호: 3783-0901 인터넷홈페이지: www.fidelity.co.kr
회 사 연 혁	2002년 8월 설립되었으며(설립 당시 상호는 "피델리티 투자자문 코리아 주식회사"임), 2003년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2004년 12월 8일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12월 10일에 자산운용업인가를 받아 그 상호를 "피델리티 투자자문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2월 4일자로 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 및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등록신청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자본금은 150억원이며 FIL Limited 및 FIL Asia Holdings Pte. Limited 가 회사의 주식을 각각 약 41.18% 및 약 58.82%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한국의 일반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투자신탁상품, 자산운용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산운용에 대한 Fidelity International의 폭넓은 해외 경험을 충분히 이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나. 주요 업무

(1) 자산운용업무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가)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다)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2) 의무 및 책임

- (가)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나) **집합투자업자의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 대 차 대 조 표			요약 손 익 계 산 서		
항 목	2013.3.31	2012.3.31	항 목	2013.3.31	2012.3.31
I. 현금및현금성자산	3,283	4,189	I. 영 업 수 익	22,263	25,105
II. 예 치 금	17,947	12,000	II. 영 업 비 용	20,914	23,991
III. 지분상품	504	504	III. 영 업 이 익	1,349	1,114
IV. 대 출 채 권	65	170	IV. 영 업 외 수 익	4	7
V. 유 형 자 산	1,042	396	V. 영 업 외 비 용	494	10
VI. 이연법인세자산	1,072	1,286	VI. 법인세비용차감전 이익	860	1,111
VII. 기 타 자 산	3,775	8,457	VII. 법 인 세 비 용	213	470
자 산 총 계	27,688	27,001	당 기 순 이 익	646	641
I. 예 수 부 채	-	6	세후기타포괄손익	-	-
II. 기 타 부 채	4,906	4,740	당기총포괄이익	646	641
부 채 총 계	4,906	4,747			
I. 자 본 금	15,000	15,000			
II. 적립금	165	124			
III. 이 익 잉 여 금	7,617	7,131			
자 본 총 계	22,782	22,254			
부채와자본총계	27,688	27,001			

주) 상기 요약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라. 운용자산 규모

(2013년 6월말 기준, 단위: 억좌)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 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					
수탁고	14,193	0	0	5,352	-	-	-	-	19,545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1) 모투자신탁의 자산운용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환헤지 거래가 실시될 경우, 환헤지 거래의 운용 및 운용지시에 관한 업무를 집합투자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라 합니다)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1981년 설립되어 자산운용업무의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FIL Limited의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조사, 투자

및 거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사실에도 불구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보수는 집합투자업자 보수에서 지급됩니다.

(2)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개요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명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설립일	1981년 5월 12일
회사주소	Level 2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Admiralty, Hong Kong 전화번호: (852) 2629 2800 팩스번호: (852) 2845 9051

※ 업무위탁계약기간의 종료, 업무위탁계약의 해지 등 일정 사유 발생시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운용사를 변경하는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신탁업자의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HSBC 빌딩 5층 전화번호: (02) 2004-0000 홈페이지: www.hsbc.co.kr

(2)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나)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다)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라)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마)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바) 증권 상환금의 수입
- (사)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업무위탁

당해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가)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 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자산을 제외함)
- (나)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의 수행

(4) 의무 및 책임

- (가) 신탁업자의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나) 신탁업자의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개요

회사명	HSBC 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빌딩 6층 전화번호: (02) 3771-9800

(2)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로 HSBC 펀드서비스(주)를 선임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및 결정, 이 투자신탁의 활동과 관련한 장부, 기록 및 명세서의 보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장부 등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열람을 위해 제공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사실에도 불구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에서 지급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일반사무관리를 아웃소싱한 경우 해당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나)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공시
(다) 집합투자업자가 위임한 기타 업무

(3)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계약 또는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전화번호: (02) 399-3350 홈페이지: www.koreaap.com

회사명	KIS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35-4 화보빌딩 4층 전화번호: (02) 3215-1450 홈페이지: www.bond.co.kr

(2) 주요 업무

- (가) 채권 시가평가 정보 제공
- (나) 기업신용평가정보 서비스
- (다) 채권지수 서비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가) 수익자 총회의 소집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본 조에 따른 통지 이후에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후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④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각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3년간 계속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⑥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합니다.
- ⑦ 위 가.(1) 단서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위 ②, ③, 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나) 수익자총회의 운영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이하 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가.(1)단서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위 정족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

- ①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요구하는 양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상세한 정보는 수익자에게 발행된 통지서에 포함됩니다.
- ②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제(가)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수익자에 대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간주의결권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라) 의결권

의결권은 수익증권 1 좌마다 1 개로 합니다. 수익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위임장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3 개의 자투자신탁과 1 개의 모투자신탁으로 구성된 경우를 가정하여 비례적 의결권 행사를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자투자신탁 의결내용	모투자신탁 보유좌수	모투자신탁 의결내용
자투자신탁 A 1,000 좌	찬성 500/반대 500	200 좌	찬성 100/반대 100
자투자신탁 B 1,000 좌	찬성 600/반대 400	100 좌	찬성 60/반대 40
자투자신탁 C 1,000 좌	찬성 800/반대 200	1,000 좌	찬성 800/반대 200

(마) 수익자총회의 연기

집합투자업자는 위 (나)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 (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위 가.(1) 단서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바) 수익자명부 관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 법령·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위탁계약서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함),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 (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 188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조 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 193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및 경비를 공제한 후의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통지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본을 제공합니다.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재무제표 및 그 부속 명세서,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와 관련하여 열람이나 그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정보는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법 제 91 조 및 법 시행령 제 95 조에 따른 제한 하에서 제공되거나 거절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에게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사유는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함이라는 것이 집합투자업자의 견해입니다.

- (1) 이 정보의 공개 또는 제3자의 사용은 이 투자신탁의 다른 수익자들에게 손해를 끼쳐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다른 사람들이 집합투자업자 고유의 투자방법 및 기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정보를 엄중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 (3) 이 투자신탁의 데이터를 시차 없이 즉시 공개하는 것은 수익자들의 단기 투자전망에 영향을 미치며, 투기업자 및 기타 전문 트레이더들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악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 (4)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하는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수익자들의 이해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활동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감독을 하게 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가)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나)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이 증권신고서(등록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 및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②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③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④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⑤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 경우는 제외
 - 수익자가 「국가재정법」 제 8조제 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인 경우(제 13조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수익자가 법 제 251조제 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인 경우
 -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집합투자기구로서 2015년 1월 1일 이후 추가발행이 없는 경우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의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증권신고서(등록신청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④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증권신고서(등록신청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위 ③ 및 ④의 사유로 임의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및 경비를 공제한 후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 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판매회사는 해당 모든 조세 및 환매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가)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④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나)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자산운용보고서는 모두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 ②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③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④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⑤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가)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합니다)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①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③ 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나)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②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를 거치는 경우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한국에서 발행되는 헤럴드 경제 및 서울경제신문에 공고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집합투자업자가 자투자신탁 수익자의 이익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가)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방법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 거래	피델리티는 펀드, 계정 또는 트레이딩 데스크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최적의 거래체결 방침(best execution policy)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개회사와 일반적인 거래관계를 체결하기에 앞서 피델리티는 중개회사에 대하여 독자적인 리서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유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거래 체결을 수행하게 될 중개회사를 선정하고 최적의 거래체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델리티는 다음과 같은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합니다. 중개회사 선정시 고려되는 핵심 요소: • 거래 규모와 종류 • 유동성 • 거래 효율성 • 영업/운영 현황(capital utilization) • 수수료율 또는 스프레드의 적정성 • 결제청산(clearance) 또는 결제능력 • 중개회사의 신용도
장내파생상품 거래	위와 같음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및 특별자산의 최저투자비율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 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판매직원 성명: 서명) -----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 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받았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